

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(제3조제2호 관련)

상시 근로자 수	장애인 고용인원	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
100명 미만	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	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
100명 이상 300명 미만		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+ 5명
300명 이상		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+ 20명

※ 비고: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